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0. 9. 14.

행정위원회

### 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8월 19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9월 1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55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0. 9. 7) 상정 의결

### 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 제 안 설 명 자 : 행 정 국 장 박 정 회 )

#### 가. 제안이유

- ‘교육·복지·사람중심 새 영등포’ 라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구정 비전 및 구정방향에 따라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과 기능으로 개편·운영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골자

- 국 명칭 변경(안 제3조).
  - “재정경제국, 주민생활지원국, 도시환경국, 건설교통국”을 “재정국, 복지국, 도시국, 건설국”으로 함.
- 행정국의 “행정지원과”를 “총무과”로, “주민자치과”를 “자치행정과”로 하고, “국제지원과”를 삭제(안 제5조제1항).
- 재정경제국의 과별 순서 변경 및 분장 사항 변경(안 제6조).
  - “재무과, 세무과, 부과과, 지역경제과 및 지적과”를 “재무과, 지역경제과, 세무과, 부과과 및 지적과”로 함(안 제6조제1항).

- 분장 사항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순서를 변경하되 “제6호. 국제금융특구 지정 추진 및 금융도시 육성전략 계획수립”을 신설하고, “제9호.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하며, 제14호의 “새주소 추진에 관한 사항”을 “도로명주소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”으로 함(안 제6조제2항).
- 주민생활지원국의 “주민생활지원과”를 “복지정책과”로 하며, “노인복지과”를 가정복지과 다음에 신설(안 제7조제1항)하고, 분장 사항에 “제14호.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·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”을 신설(안 제7조제2항).
- 도시환경국의 “공원녹지과”를 “푸른도시과”로 하고 “맑은환경과”를 “환경과”로 하며(안 제8조제1항), 분장 사항의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순서를 변경하되, “제1호. 도시계획의 수립·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”을 “제3호. 도시계획의 수립·조정 및 결정, 도시환경정비사업,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“제2호. 주택개량, 도시재개발 및 뉴타운사업 등에 관한 사항”을 “제1호. 공동주택관리, 주택개량, 도시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“제4호.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”과 “제18호.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”을 신설(안 제8조제2항).
- 건설교통국의 “가로경관과”를 “건설관리과”로 함(안 제9조제1항).

#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이 현 영)

- 본 조례안은 민선5기 ‘교육·복지·사람중심의 새 영등포’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조직을 재정비하면서, 신설 및 폐지되는 부서와 조정되는 부서별 업무에 따른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조직을 구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- 재정경제국, 주민생활지원국, 도시환경국, 건설교통국을 각각 재정국, 복지국, 도시국, 건설국으로 국명을 변경하고, 행정지원과, 주민자치과, 주민생활지원과, 공원녹지과, 맑은환경과, 가로경관과를 각각 총무과, 자치행정과, 복지정책과, 푸른도시과, 환경과, 건설관리과로 과명을 변경하였음.
-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노인 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분리하고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노인 복지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고, 국제지원

과는 총무과 등 여러 부서의 유사업무와 통합하여 폐지하였으며, 여의도 국제금융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미래를 준비할 업무를 재정경제부에 신설하고, 주민생활지원국에 국민 건강 복지를 위한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·유지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음.

- 도시환경국에 분장사항을 정비하였으며,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와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.
- 이러한 개정안은 국명칭을 간소화하고 유사업무 통폐합과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, 지역경제 활성화,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에 가장 가깝고 영향이 많은 업무를 강화하는 바람직한 조직 개편이지만 국명칭 변경이 과다축소한 면이 있고, 과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대민업무 처리에 혼선이 우려되므로 향후, 변경 시에는 국민에게 충분한 사전 홍보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修正案 要旨

##### 가. 수정이유

-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부서별 업무 내용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기 위하여 수정함.

##### 나. 주요골자

- 제6조 제2항 제5호 중 “상공업과 중소기업의” 를 “상공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” 로 하고,
- 제7조 제2항 중 신설되는 “제14호” 를 “제11호” 로 하며,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,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.

#### 5. 審査結課 : 修正案可決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0. 9.

제출자 : 권영식 위원

## 1. 수정이유

-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 
부서별 업무 내용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기 위하여 수정함.

## 2. 주요골자

- 제6조 제2항 제5호 중 “상공업과 중소기업의” 를  
“상공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” 로 하고,
- 제7조 제2항 중 신설되는 “제14호” 를 “제11호” 로 하며,  
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 
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,  
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6조 제2항 제5호 중 “상공업과 중소기업의” 를  
“상공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” 로 하고,
- 제7조 제2항 중 신설되는 “제14호” 를 “제11호” 로 하며,  
“제11호” 를 “제12호” 로 하고,  
“제12호” 를 “제13호” 로 하며,  
“제13호” 를 “제14호” 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재정경제국”을 “재정국”으로, 제3조제1항제3호 “주민생활지원국”을 “복지국”으로 “도시환경국”을 “도시국”으로

“건설교통국”을 “건설국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2호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의2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제1호 중 “재정경제국장”을 “재정국장”으로,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, “도시환경국장”을 “도시국장”으로,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행정지원과”를 “기획홍보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, “행정지원과”를 “기획홍보과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참여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주민자치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민원봉사과”를 “민원여권과”로 한다.

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재정경제국장”을 “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⑯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3항제2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노인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노인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제4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”을 “복지국장 및 도시국장”으로 한다.

㉒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7항 중 “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”를 “생활체육담당주사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”를 “생활체육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②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도시환경극장”을 “복지극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의6제1항 중 “청소행정담당주사”를 “자원재활용담당주사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청소행정담당주사”를 “자원재활용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②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3항 중 “도시환경극장”을 “복지극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의6제1항 중 “청소관리담당주사”를 “도시청결담당주사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청소관리담당주사”를 “도시청결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②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 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극장”을 “복지극장”으로 한다.

②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도시환경극장”을 “도시극장”으로 한다.

②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중 “가로경관과장”을 “건설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
②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가로경관과장”을 “건설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
②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극장”을 “건설극장”으로 한다.

③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 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건설교통극장”을 “건설극장”으로 한다.

③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건설교통극장”을 “건설극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극장”을 “건설극장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건설교통극장”을 “건설극장”으로 한다.

③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 
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극장”을 “건설극장”으로 한다.

③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③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③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③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9조제4항1호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# 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 (생략) ① (생략) ② (생략) 1호~4호 (생략) 5. <u>상공업과 중소기업의</u> 지원·육성에 관한 사항 6호~ 10호 (생략)	제6조 (개정안과 같음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 1호 ~4호 (개정안과 같음) 5. <u>상공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</u> 지원·육성에 관한 사항 6호~ 10호 (개정안과 같음)
제7조 (생략) ① (생략) ② (생략) <u>1호~13호</u> (현행과 같음) <u>14.</u>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·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	제7조 (개정안과 같음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 <u>1호~10호</u> (현행과 같음) <u>11.</u> (개정안 14호와 같음) <u>12.</u> (현행 11호와 같음) <u>13.</u> (현행 12호와 같음) <u>14.</u> (현행 13호와 같음)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 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‘교육·복지·사람중심 새 영등포’라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구정비전 및 구정방향에 따라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과 기능으로 개편·운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과 신설 및 폐지 (안 제5조 및 안 제7조)

- 노인복지과 신설 및 국제지원과 폐지

나. 국·과 명칭 변경 (안 제3조 ~ 안 제9조)

- 재정경제국 ⇒ 재정국
- 주민생활지원국 ⇒ 복지국
- 도시환경국 ⇒ 도시국
- 건설교통국 ⇒ 건설국
- 행정지원과 ⇒ 총무과
- 주민자치과 ⇒ 자치행정과
- 주민생활지원과 ⇒ 복지정책과
- 공원녹지과 ⇒ 푸른도시과
- 맑은환경과 ⇒ 환경과
- 가로경관과 ⇒ 건설관리과

다. 제6조(재정경제국)의 ‘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’을 삭제하고 ‘국제금융특구 지정추진 및 금융도시육성전략 계획 수립’에 관한 사항 신설

라. 제7조(주민생활국)의 ‘공공 체육시설의 설치·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’에 관한 사항 신설

마. 제8조(도시환경국)의 ‘공동주택관리’, ‘도시환경정비사업, 뉴타운사업’, ‘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’, ‘에너지행정에 관한 사항’에 관한 사항  
신설

### 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련부서와 협의 되었음

라. 기 타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○ 입법예고(2010. 8. 6 ~ 8. 10) 결과 : 의견 없음

○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사무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재정경제국”을 “재정국”으로, “주민생활지원국”을 “복지국”으로, “도시환경국”을 “도시국”으로, “건설교통국”을 “건설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행정지원과”를 “총무과”로, “주민자치과”를 “자치행정과”로 하고, “국제지원과”를 삭제한다.

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재정국) ① 재정국에 재무과, 지역경제과, 세무과, 부과과 및 지적과를 둔다.

② 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국·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
2. 물품관리·계약·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
3. 소비자 보호,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4. 농산물·수산물·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
5. 상공업과 중소기업의 지원·육성에 관한 사항
6. 국제금융특구지정 추진 및 금융도시 육성전략 계획 수립
7. 지방세 징수와 구 세입의 총괄
8. 세외수입 과징업무의 분석평가와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9.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
10.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
11.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

- 12. 토지관리·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
- 13.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
- 14.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
제7조(복지국)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노인복지과, 문화체육과 및 청소과를 둔다.

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주민생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
- 2.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
- 3. 생활보장, 의료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
- 4.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
- 5. 고용안정과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
- 6. 여성보호와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
- 7.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지도에 관한 사항
- 8. 관광진흥과 문화재에 관한 사항
- 9. 문화·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
- 10. 생활체육과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
- 11. 청소대행업자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- 12. 생활폐기물·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
- 13.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
- 14.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·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

제8조(도시국) ① 도시국에 주택과, 도시계획과, 도시디자인과, 건축과, 푸른도시과 및 환경과를 둔다

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공동주택관리, 주택개량,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
- 2. 무허가건물과 위험건축물에 관한 사항
- 3. 도시계획의 수립·조정 및 결정, 도시환경정비사업,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
- 4.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
- 5. 영등포디자인 개선 및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
- 6.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7.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
8. 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
9. 옥외광고물 관리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
10.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
11. 건축허가·착공·준공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
12. 공원의 개발 및 관리와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
13. 조경계획·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
14. 대기·수질보전에 관한 사항
15. 소음·진동 대책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
16.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
17.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18.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

제9조의 제목 “(건설교통국)”을 “(건설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건설국에 건설관리과, 도로과, 치수방재과, 교통행정과 및 주차문화과를 둔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재정경제국”을 “재정국”으로, 제3조제1항제3호 “주민생활지원국”을 “복지국”으로 “도시환경국”을 “도시국”으로 “건설교통국”을 “건설국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2호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표1의2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제1호 중 “재정경제국장”을 “재정국장”으로,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, “도시환경국장”을 “도시국장”으로,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행정지원과”를 “기획홍보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, “행정지원과”를 “기획홍보과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주민자치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민원봉사과”를 “민원여권과”로 한다.

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재정경제국장”을 “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-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-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- ⑯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0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  
제30조제3항제2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- 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8조 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- 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9조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- 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6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노인복지과장”으로 한다.  
제6조제3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  
제12조제2항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노인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- 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- 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6조제3항제4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”을 “복지국장 및 도시국장”으로 한다.
- ㉒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8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  
제8조제7항 중 “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”를 “생활체육담당주사”로 한다.  
제12조제2항 중 “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”를 “생활체육담당주사”로 한다.
- ㉓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2제3항 중 “도시환경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의6제1항 중 “청소행정담당주사”를 “자원재활용담당주사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청소행정담당주사”를 “자원재활용담당주사”로 한다.

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3항 중 “도시환경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의6제1항 중 “청소관리담당주사”를 “도시청결담당주사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청소관리담당주사”를 “도시청결담당주사”로 한다.

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㉖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도시환경국장”을 “도시국장”으로 한다.

㉗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중 “가로경관과장”을 “건설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
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가로경관과장”을 “건설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
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㉚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㉛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1호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, <u>재정경제국</u> , <u>주민생활지원국</u> , <u>도시환경국</u> 및 <u>건설교통국</u> 을 둔다.	제3조(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, <u>재정국</u> , <u>복지국</u> , <u>도시국</u> 및 <u>건설국</u> 을 둔다.
제5조(행정국) ① 행정국에 <u>행정지원과</u> , 기획홍보과, <u>주민자치과</u> ,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, <u>전산정보과</u> 및 <u>국제지원과</u> 를 둔다. ② (생략)	제5조(행정국) ① 행정국에 <u>총무과</u> , 기획홍보과, <u>자치행정과</u> , 교육지원과, 민원여권과 및 <u>전산정보과</u> 를 둔다.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 <u>재정경제국</u> ) ① <u>재정경제국</u> 에 <u>재무과</u> , <u>세무과</u> , <u>부과과</u> , <u>지역경제과</u> 및 <u>지적과</u> 를 둔다. ② <u>재정경제국장</u>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호~2호 (생략) 3. 지방세 징수와 구 세입의 총괄 4. 세외수입 과징업무의 분석평가와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5.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6.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7. 소비자 보호,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. 농산물·수산물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9.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10. 상공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 <u>&lt;신 설&gt;</u>	제6조( <u>재정국</u> ) ① <u>재정국</u> 에 <u>재무과</u> , <u>지역경제과</u> , <u>세무과</u> , <u>부과과</u> 및 <u>지적과</u> 를 둔다. ② <u>재정국장</u>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호~2호 (현행과 같음) 7. (현행 제3호와 같음) 8. (현행 제4호와 같음) 9. (현행 제5호와 같음) 10. (현행 제6호와 같음) 3. (현행 제7호와 같음) 4. (현행 제8호와 같음) <u>&lt;삭 제&gt;</u> 5. (현행 제10호와 같음)  <u>6. 국제금융특구지정 추진 및 금융도시 육성전략 계획 수립</u>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11호 ~ 13호 (생략)</p> <p>14. <u>새주소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	<p>11호 ~ 13호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<u>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7조(주민생활지원국) ① <u>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문화체육과 및 청소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p>1호~13호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7조(복지국) ① <u>복지국에 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노인복지과, 문화체육과 및 청소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p>1호~13호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<u>공공 체육시설의 설치·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8조(도시환경국) ① <u>도시환경국에 주택과, 도시계획과, 도시디자인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 및 맑은환경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p>1. 도시계획의 수립·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</p> <p>2. <u>주택개량, 도시재개발 및 뉴타운사업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무허가건물과 위험건축물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〈신 설〉</u></p> <p>4. 영등포디자인 개선 및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</p> <p>5.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p>	<p>제8조(도시국) ① <u>도시국에 주택과, 도시계획과, 도시디자인과, 건축과, 푸른도시과 및 환경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p>3. 도시계획의 수립·조정 및 결정, <u>도시환경정비사업,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. <u>공동주택관리, 주택개량, 도시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4. <u>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6.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</p> <p>7. 건축허가·착공 준공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</p> <p>8. 공원의 개발 및 관리와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</p> <p>9. 조경계획·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</p> <p>10. 대기·수질보전에 관한 사항</p> <p>11. 소음·진동 대책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</p> <p>12. 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13.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14. 옥외광고물 관리 등 <u>가로경관</u>에 관한 사항</p> <p>15.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</p> <p>16.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〈신 설〉</u></p>	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11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12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<p>13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 <p>14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 <p>15. (현행 제11호와 같음)</p> <p>8. (현행 제12호와 같음)</p> <p>16. (현행 제13호와 같음)</p> <p>9. 옥외광고물 관리 등 <u>도시디자인</u>에 관한 사항</p> <p>10. (현행 제15호와 같음)</p> <p>17. (현행 제16호와 같음)</p> <p>18. <u>에너지 행정</u>에 관한 사항</p>
<p>제9조(<u>건설교통국</u>) ① <u>건설교통국에 가로경관과, 도로과, 치수방재과, 교통행정과 및 주차문화과를 둔다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<u>건설국</u>) ① <u>건설국에 건설관리과, 도로과, 치수방재과, 교통행정과 및 주차문화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